

住宅建築許可制度改善策

実施에 대한 小考

姜 奉 辰

国宝建設団代表

政府에서는 歷史의 維新課業達成을 為한 施政의 一環으로 国民生活과 密接한 関係가 있는 庶政을 刷新하고 從來 民願事務와 結付해서 發生했던 各種의 不條理를 剔決除去하려는 施策을 果敢하게 推進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은 維新課業의 早期達成과 国家百年大計를 為해서 至極히 바람직한 것으로서 오히려 晚時之歎을 禁할길이 없다.

특히 이러한 庶政의 刷新과 不條理의 除去에 对한 政策은 一時의 口号政策이 아니라 恒久의 繼續政策으로서 民族総和團結과 国家安保의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 理念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重大한 意義를 지닌 施策을 効果的으로 達成하려는데는 무엇보다도 먼저 国民各自의 自覺과 協調가 있어야 할것은勿論이려거니와 아울러 各種法令의 整備化作業도 併行해 나가야 할것이다.

序上の 趣旨에 立脚하여 今般 政府에서는 從來 建築許可를 둘러싼 不美스러운 여러가지 形態의 不條理를 根絕하고 明朗한 国民生活과 清新한 社會氣風을 振作 시키기 为하여 国務總理指示 第20號(1975. 12. 15字)로 「住宅建築許可制度改善策」을 마련하여 全國 一齊히 施行하기에 앞서 干先 示範的으로 1976. 1. 1부터 水原, 全州, 晉州, 春川等 4個市에 実施한 結果 「建築許可의迅速化」, 「行政의 簡素化」 및 「不條理의 除去」等 面에서 政府가 当初 意圖했던 바와 같은 所期의 成果를 거두었음에 힘을 얻어 이 制度를 다시 1976. 7. 1부터는 準備態勢가 未備했던 서울特別市와 建築士가 1人밖에 없어 実施不能 했던 議政府市를 除外한 全國의 33個市 및 提川, 瑞山, 保寧, 大德, 南濟州 等 5個郡에 擴大實施하게 된 것이다.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都市計劃整備等 先行해야 할 事項에 对한 措置를 今年末까지 끝내도록 하고 議政府市도 年末까지 準備를 갖추어 來年 1月 1日부터는 全面的으로 実施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住宅建築許可制度改善策」이 全國的으로 擴大實施하게 되자 大多數의 建築士들은 이 制度의 根本趣旨가 「建築許可의迅速化」, 「行政의 簡素化」 및 「不條理의 除去」等에 있음을 認識하고 그 妥當性을十分 認定하여 이 制度実施에 順應하고 있는 反面에 実施 運營面에 있어서의 実施要綱의 未備點과 그 内容에 不合理性을 内包하고 있음을 指摘하고 이에 对한 是正을 要望하고 있다.

그中에서도 가장 論難의 焦点이 되어 있는것이 連帶責任建築士의 組編成制度이다.

実施要綱 3項에는 連帶責任建築士의 組를 編成함에 있어

(가) 原則적으로 5人以上으로 하되 不得已한 경우에 市道知事가 3人以上으로 編成하게 할 수 있고

(나) 1, 2級建築士混成으로 編成할 수 있으나 建築士法 第4條에 該當하는 建築物의 連帶責任建築士는 1級 建築士(다른組의 1級建築士를 包含)로 編成하되 서울, 釜山, 大邱에서는 3人以上 其他地域에서는 2人以上 으로 하고

(다) 連帶責任建築士의 事務室을 組別 共同事務室로 하거나 同一建築物内에 設置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가)의 組編成人員數에 对하여는 建築士의 分布狀態를 考

慮해서 現實的으로 可能하도록 하기 為한 規定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되면 原則에 立脚해서 組를 編成한 地域에서는 5人組 및 6人以上組가 連帶責任을 지게 마련인 반면에 地方長官들의 載量에 立脚해서 組를 編成한 地域에서는 3人組 및 4人組가 連帶責任을 지게되어 660m²라는 同一條件의 住宅建築에 있어서 連帶責任을 分擔하는 建築士의 人員數가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은 建築行政의 統一性으로 보나 法의 衡平原則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나 하는 것이다.

따라서 組編成人員數에 대해서는 要綱을 고쳐서 地方長官의 載量權을 없애고一律으로 下限線인 3人으로 내리는 것을 多大數建築士가 要望하고 있는 実情이다.

(나)의 1, 2級建築士混成組 編成에 대하여는 現實의 인面에서 볼 때 이들 要綱 그대로 施行하는데는 여러가지 難點과 隘路가 많다고 한다.

2級建築士의 業務限界인 300m²以上인 建築物에 대한 連帶責任을 지는 1級建築士의 人員數를 서울, 釜山, 大邱에서는 3人以上, 其他地域에서는 2人以上이란 下限線을 定해서 1, 2級建築士混成組를 編成할 수 있게 하고 1級建築士가 不足한 地域을勘案해서 다른組의 1級建築士와의 責任提携를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実地問題에 있어서 建築士同一人이 두개의 組編成에 加擔하는 結果가 되고 担当建築士는 일일이 他組構成員의 連帶責任 建築士를 찾아다니며署名捺印을 받아야 하는 苦痛과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게 되어 있을뿐 아니라 現在 全國의 1級建築士分布狀態를 보면 35個市中 1級建築士 1人 밖에 없는 市가 10個市나 된 現實에 비추어 볼 때 이 規定은 마땅히 是正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現實情에 맞도록 하기 為하여混成組의 1級建築士構成要件을 緩和하여 全國一律으로 1人以上으로 하고 建築士法 第4條에 該當하는 業務遂行은 그 1級建築士가 担当하도록 하고 連帶責任은 担当建築士가 所屬된 組에서 지도록 是正해 줄것을 要望하고 있다.

(다)의 連帶責任 建築士의 事務室을 組別 共同事務室로 하거나 同一建築物内에 設置해야 한다는 規定에 对하여는 많은 建築士가 難色을 表明하고 있다.

連帶責任 建築士와 担当建築士相互間의 連帶責任 事務處理上으로 봄서는 共同事務室이나 同一建築物内에 한 군데 모여서 業務를遂行하는 것이 能率面과 經營面에서 바람직하다는 当為性을 認定하면서도 한便으로 現實의 인面에서 隘路가 많음을 指摘하고 있다.

建築士 事務所가 어디까지나 嘗利를 圖謀하는 業체는 아니드라도 生業의 하나인 以上 事務所의 立地의 規件이 良好한 곳에 設置하므로써 業務遂行과 顧客誘致에 有利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변두리 뒷골목에 設置한 경우와 都心地나 許可廳隣近에 設置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自明한 理致이다.

建築事務室의 最少限 規模를 5坪乃至 10坪으로 잡고 共同事務室로 할 경우에는 5人組인 때 25坪乃至 50坪의 事務室이 必要할 것이며 3人組인 때는 15坪乃至 30坪의 事務室을 세로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욱個人事務室單位로 同一建築物内에 設置할 경우에는 3室乃至 5室이 同時에 들어갈 수 있는 建築物이어야 할 것이다.

現實面에서 볼 때 貸貸料關係, 立地의 位置關係 또는 同時入住可能空室有無關係等 여러 가지 規件에 合當한 事務室을 求得하기란 至極히 困難한 実情이라고 指出하고 있다.

또한 共同事務室로 할 경우 個個人의 業務上 機密維持에도 難點이 있을뿐 아니라 汎建築物에 適用하는 것도 아니고 一定規模·以下의 住宅建築에 限한 連帶責任을 지는 建築士 군이 共同事務室이나 同一建築物内에 事務室을 設置할必要가 어디 있느냐 하는 意見도 있다.

그러므로 建築士個個人의 從前事務室을 그대로 使用하면서 該當建築物에 대한 相互連帶責任만 지도록 組만 編成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드라도 建築士中에서는合理的인 業務処理와 運營上의 当為性에 立脚해서 自發적으로 共同事務室을 設置하던가 同一建築物内에 함께 事務室을 設置하려는 建築士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事務室設置는 建築士의 自律의인 處理에 맡기기로 하고 要綱의 事務室規制에 関한 規定은 削除하는 것이妥當하리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論及한 共同事務室의 概念에 对하여는 文字그대로 建築士業務는各個人 經營體를前提로하고~다만組構成員이 事務室만共同으로使用하는 形態를指稱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一定한 規約下에 合同經營體로 運營하는 所謂「合同事務所」와는 根本의으로 다르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簡易節次에 의한 民事紛爭事件 處理特例法」에 依據 設立한 「合同法律事務所」에게는 「公証人法」에 規定한 公証業務를遂行할 수 있는 權限과 特惠를 주고 있는 것과 같이 建築士에게도 어떤 法의 根據를 마련하여 이 法에 依據 主務長官의 認可를 받아 設立한 「合同建築事務所」에 限하여는 660m² 以下의 住宅建築뿐만 아니라 모든 建築物에對한 許可廳의 權限을大幅移讓하고 또 稅制面이나 其地 業務面에서의 特惠를 주도록 하면 군이 事務室을共同으로 하거나 同一建築物内에 設置해야 한다는 規制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解決될 問題일뿐 아니라 行政簡素化를促進시키는 一石二鳥의 効果가 있을 것이다.

毎年の建築許可統計에 依하여 住宅建築이 차지하는比率을 보면 建築面積上으로는 住宅建築이 全體建築의 75~80%이며, 棟數上으로는 85~90%로서 住宅建築이 断然首位를 차지하고 있는 実情에 비추어 今般 實施하는 「住宅建築許可 制度 改善策」의 施行은 建築行政의 一大改革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와같이 建築行政의 劃期的 轉換點을 갖어오는 重且大的 性格을 지닌 것인만큼 建築士는 누구나 至大한 関心을 갖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改善策実施要綱에는 上記한 連帶責任 建築上의 組編成問題 以外에 建築許可業務 處理規定, 設計圖書의 作成 및 擦印規定, 工事監理規定, 中間検査의 實施規定, 竣工検査規定 및 合同検査班의 編成規定等 多く의 條項에도 未備한 点과 不合理한 点을 是正補完해야 할 素地를

多分히 内包하고 있으나 次次 改善 되리라 믿고 言及을 省略 하거니와 한가지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 것은 事前に 建築士의 意見을 綜合할 수 있는 公廳會ら든가 建築士를 參席시킨 要綱制定審議会와 같은 機構를 通해서 制定 했더라면 좀더 좋은 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된다.

비록 法的 뒷받침이 없는 行政指示로 實施 한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施行이 既定事實化 된 以上 이를 遵守해야 하며 順應해야 할것이 国民의 道理일 것이다.

그러나 上記한 바와같이 여러가지 不合理하고 未備한 点과 法的根據가 없는 條項等에 對해서는 慎重히 調査検討해서 改善補完해야 하며 또 関係法을 早速히 改正해서 法的根據에 立脚한 施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新刊案内

韓國上代建築의 研究

原著 米田美代治
譯 申榮勲

東山文化社編

正方菊判 185面

定価 4,800원

TEL. 73-9492